

●**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-11호**

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(기간연장)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.

2019년 1월 9일

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

1. 하 천 명: 영산강(국가하천)
2. 위 치: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산1
3. 점용목적: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
4. 점용면적: 0.5㎡
5. 점용개요: 차단막 설치 L=200m
6. 점용기간: 당초 - 2012. 3. 26. ~ 2017. 3. 25..
 연장 - 2017. 3. 26. ~ 2022. 3. 25.
7. 피허가자: 영암군수